

# 정 관 (定 款)



學校法人 順孝學園



# 學校法人 順孝學園 定款

(改正 : 2022년 03月 08日)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2)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순효학원 (이하 “법인”) 이라 한다. (개정 2012.03.21)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고양제일중학교 (개정 2012.11.20. 시행일은 2013.03.01)
2. 고양외국어고등학교
3. 안산공업전문대학 (교명은 “신안산대학교” 라 한다.) (개정 2011.05.01, 2011.11.29)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에 둔다. (개정 2003.03.27)

**제5조 (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9.)

② 제1항으로 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한다. (신설 2012.06.19.)  
〔전문개정 2012.06.19〕 〔시행일 2012.07.27〕 제5조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산

-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계

-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대학평의원회(대학)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중·고) 심의를 거친 후 학교 법인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는 산학협력단장이 편성하여, 학교의 장에 허가를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한다. (단서조항 신설 2004.02.24., 개정 2022.03.08.)  
④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따로 둔다. (신설 2004.02.24.)

- 제9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

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12.)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회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이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 지로 한다.

### 제3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2009.09.22

##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 7인 (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6.06.02., 2009.09.22., 2010.10.26. 2019.09.30., 2020.07.31)
- ② 감사 2인 (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09.09.2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이사장 및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09.09.22)
  2. 감사 2년 (추천감사를 포함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9.22)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2, 2009.09.22)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1.12, 2009.09.22)

1. 사립학교법 또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3에 의한 당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했을 때
4. 당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 또는 중요 추진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때
5. 당해 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했을 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2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① 법인은 개방이사 또는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신설 2009.09.22)

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는 대상인원의 2배수를,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9.09.22)

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경우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1. 법인 설립자 및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법인 임원(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3.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신설 2020.11.27 ]

**제20조 3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 (신설 2009.09.22, 개정 2011.05.01, 2011.12.19)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09.22)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③ 제2항 제2호 제3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법인 및 대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 (신설 2009.09.22)

④ 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09.09.22)

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9.22)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정수의 1/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9.22)

③ 개방이사는 이사정수의 1/4로 한다. (신설 2009.09.22)

④ 이사 중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9.22.), (개정 2020.11.27.)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 4 규정에 따른 교육경험

⑤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9.09.22)

⑥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개정 2009.09.22)

⑦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신설 2009.09.22)

⑧ 이 법인의 건학 이념(종교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09.22)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9.09.22., 개정 2022.03.08.)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 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 한다. (개정 2009.09.22)

-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12.03.)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이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장을 겸 할 수 없다. (개정 2003.03.27, 2009.09.22)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9.22)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09.22)

④ 법인에서 필요시에는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의 2(상근임원)** ① 제18조 제1항의 임원 중 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4.27.>

## 제2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9.09.2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9.22.)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6.19.)

**제28조의 2 (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09.22.) (개정 2020.11.2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22.)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8.)

**제31조 (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 될 수 있도록 7일 이

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2)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인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9.22.)

### 제3절 대학평의회

**제32조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위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제32조의 2 (대학평의회 구성 등)** 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설립이념 고양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개정 2020.11.27.)

1. 교원 4인
  2. 직원 4인
  3. 조교 1인 [신설 2020.11.27.]
  4. 학생 1인
  5. 동문 1인
  6. 설립이념 고양과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1인 (개정 2020.11.27.)
-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의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9.22)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09.22)

**제32조의 3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제32조의 4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신설 2006.01.12) (개정 2009.09.22)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 5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09.22.)

## 제4절 사학윤리위원회

- 제33조 (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 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별표 3)을 준수한다. (신설 2006.01.12)
-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06.01.12.)

## 제4장 수익사업

**제34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09.22)

1. 양묘 및 관상목 재배사업
2. 대지 및 건물 임대사업
3. 음식업 및 숙박업
4. 기타사업

**제35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4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순효농원을 경영 한다.

**제36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순효농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산 77번지에 둔다.

**제37조 (관리인)** ① 제34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제5장 해 산

**제3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 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제39조의2 (기록물 관리)**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27]

**제40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교 직 원

### 제1절 교 원

#### 제1관 임 명

**제41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9.09.22)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③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의 장 이외의 정교사 및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 한다. (개정 2006.06.02, 2009.09.22)

④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 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2)

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 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 또는 위촉하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되 그 임용기간 및 계약조건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06.02) (개정 2009.09.22., 2019.06.26.) 다만, 대학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및 정계 이외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총장은 위임된 임면권 행사시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0.11.27.)

⑥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5 및 제9조의6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신설 2022.03.08.)

1. 교사로의 임용 당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소지자격 과목의 교과 교사 결원이 있을 것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정관 제41조에 따라 학교법인 순효학원에서 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

⑦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학교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3.08.)

**제42조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 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정년보장 교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01.12.)

**제42조의 2 (정년보장교원 및 계약제교수의 정수)** 정년보장교원 및 계약제 교수의 정수는 법정전임교원의 25% 이내로 한다. 단,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12% 이내

로 한다. (개정 2018.02.02., 2022.03.08.)

제42조의 3 (임용기간의 계산) 임용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3을 준용한다.

#### 제42조 4 삭제

제42조의 5 (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 정관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신설 2002.02.26)

##### 1. 근무기간

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03.08.)

나. 부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6.19.)

라. 강사, 비전임교원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9.06.26.)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42조의 6 (신규채용 등)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

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9.22)

③ 전문대학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④ 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 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 법인의 임·직원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 이사장은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2, 2009.09.22)

⑥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 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06.01.12)

⑧ 제6항의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09.22)

제42조의 7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 교원은 근무 기간이 종료되어 (종전의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42조의 5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2.02.26)

1. 교 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정관 제49조 4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022년도 이후 임용되는 교원은 5년내지 10년 범위내의 기간 (5~10년 내에서 확정) (개정 2022.03.08)
2. 부 교 수 : 5년 내지 10년 범위내의 기간 (5~10년 내에서 확정) (개정 2015.09.21)
3. 조 교 수 : 4년 (4년내 에서 확정)
4. (삭제 2012.06.19.)

② 이사장은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대학교원의 신청에 따라 다시 임용할 것 인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관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6.01.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대학 교원에게 다시 임용 할 것 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⑦ 이사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학의 장은 업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6.06.02)

**제42조의 8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 (외국인 등 제외)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1.12)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인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06.01.12.)
7. 대학 업무수행에 특별히 필요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 업적이 탁월하거나 또는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우수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 (외국인 교원의 경우 제외)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6.01.12.)

③ 제1항 제7호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은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되,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8.10.26>

**제42조의 9 (기간제 교원 임용)** ① 이사장은 중·고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9.22)

1. 교원이 정관 제4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과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09.22)

## 제2관 신 분 보 장

**제43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 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9.09.22)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학교의 구조개혁 등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신설 2021.07.13)

**제44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5.30)
- ② 제43조 제2호 및 제4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 ③ 제4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④ 제4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⑥ 제43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 ⑦ 제4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⑧ 제43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 을 초과 할 수 없다
- ⑨ 제43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해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⑩ 제43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임면권자는 근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07.13)

**제45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 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3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6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4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4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보수의 50%내에서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07.13)

**제47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8조 (보 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49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9조의 2 (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안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명예 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다.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 제49조의 4 (교원의 정년)** ① 교원(전문대학)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원(중·고등학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단 학교의 장(전문대학 및 중·고등학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3.10.27)  
③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3관 교원 인사 위원회

**제50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9.22)

**제51조 (인사위원회 회의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09.22)

1.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을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관 제42조 7의 제3항 및 제8항 규정에 관한 사항
-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제42조의 5의 제1항 제4호를, 정관 제42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42조 7의 제6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03.03.27, 2006.01.12)

-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3조 (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단서조항, 신설 2009.09.22)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 내용 중 특정인이 인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 (회의록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6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8.23.)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 사람

마.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03.08.)

③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03.08.)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의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 임명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범인인 때에는 징계처분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03.08.)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 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기관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의 1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2.03.08.)

제69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절 사무직원

제70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05.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26.)
-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1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강임, 휴직, 직위휴직, 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0.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설 2022.03.08.)

제72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 (신분보장 및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그 밖의 신분보장에 관하여서는 각급 학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2015.06.19)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을 따른다. (신설 2022.03.08.)

제75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 5, 70조의 6을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08.)

②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3.08.)

③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03.08.)

## 제7장 직제

### 제1절 법인

제76조 (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절 전 문 대 학

- 제77조 (총장 등) ① 전문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9.09.22)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09.22)
- ③ 전문대학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9.09.22., 2019.02.08.)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9.22.)
- ⑤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임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02.08.)

- 제78조 (하부조직) ① 전문대학에 교무혁신처, 입학홍보처, 학생취업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사무처,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03.03.27, 2004.02.24, 2011.05.01, 2011.12.19., 2015.07.22., 2017.12.21., 2021.07.13)
- ② 교무혁신처장, 입학홍보처장, 학생취업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하며,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또한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필요한 경우 부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08.23., 2018.10.26. 2021.07.13) 다만, 산학협력 단장은 산학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하며, 단장으로 임명된 자는 특별법인의 1인 이사가 된다. (단서조항 신설 2004.02.24, 개정 2011.05.01, 2011.12.19., 2015.07.22., 2017.05.25., 2017.12.21.)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④ 부설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둔다. (개정 2021.07.13.)

- 제79조 (부속시설)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04.27., 2021.04.29>
-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 5급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한다. <개정 2012.06.19., 2017.04.27., 2021.04.29>
-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09.22)
-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27., 2021.04.29>

- 제80조 (도서관)** ① 도서관에 사서계 · 열람계를 두며 사서주임은 주사로 보하고  
열람주임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절 고등학교

- 제81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  
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2조 (하부조직)** ① 고등학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2)  
②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교육 · 연구지원 자문에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법인의 승인을 받아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자문기  
구의 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되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다. <개정 2021.04.29>

### 제4절 중학교

- 제83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  
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84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  
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2.)

### 제5절 정원

- 제85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  
표 2와 같다. (개정 2006.01.12, 2006.06.02, 2010.05.18. 2012.04.24., 2014.05.30.,  
2015.06.19., 2016.06.30., 2018.04.27. 2019.04.26., 2021.05.26. 2021.06.11.)

##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6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7조 (위원회 설치 범위 및 해산) 병설학교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88조 (위원회의 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9.09.22)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6.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7.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③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89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 배수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1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92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의논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어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 하였을 때

4. 위원이 운영규정 제88조 제89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9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6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제97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 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8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9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 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0조 (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01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 (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자문을 받은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4조 (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 경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5조 (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벽제중학교와 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 등 대해 벽제 중학교·고양외국고등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의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9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2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1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선 1인을 둘 수 있다.

**제116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장 보 칙

**제118조 (공 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간지 중에 공고한다.

**제11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2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이지선	1925.06. 10	4년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 산 77
이 사	신순철	1931.01. 24	4년	〃
이 사	한영수	1932.08. 11	4년	〃
이 사	김두삼	1933.03. 16	4년	〃
이 사	이주연	1932.02. 04	4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73-1
이 사	조진규	1935.10. 30	4년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 산 77
감 사	박도현	1927.01. 02	2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47
감 사	장기록	1921.09. 20	2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2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면 임기 없이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가산 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64조 내지 제77조 제83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안산공업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신안산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최초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임기)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3.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제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조의 7 및 제39조의 8의 규정은 2002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8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7 제4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3.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7 제5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 7의 5항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2007. 7.27(사립학교법시행일)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 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개방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법인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법인 지선학원의 각종 기본재산의 소유권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순효학원의 소유권으로 본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7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5제1항제1호, 제42조의7제1항제4호, 제79조제2항의 개정정관은 2012년 07월 22일부터, 제5조의 개정정관은 2012년 0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벽제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고양제일중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5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6명

일반직계 4명

4급(참사) 1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2명

기능직계 1명

9등급(운전기사보) 1명

고용직계 1명

고용직 1명

[ 별 표 2 ] (개정 2010.07.15, 2011.05.01, 2011.12.19., 2012.04.24, 2014.05.30, 2015.06.19.,  
2016.06.30., 2018.04.27., 2019.04.26., 2021.05.26., 2021.06.11)

### 신안산대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64명
일 반 직 계	54명
3급(부이사관)	
4급(서기관)	
5급(사무관)	
6급(주사)	
7급(주사보)	
8급(서기)	
9급(서기보)	
연 봉 직 계	10명

###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12명
일 반 직 계	5명
5급(사무관)	1명
6급(주사)	1명
7급(주사보)	2명
8급(서기)	1명
사 서 직 계	1명
9급(사서)	1명
위 생 직 계	1명
8급(위생)	1명
기 능 직 계	5명
8급(서기)	5명
9급(서기보)	
10등급	〈삭제〉

## 고양제일중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5명

일반직계

2명

6급(지방교육행정 주사)

1명

7급(지방교육행정 주사보)

}

1명

8급(지방교육행정서기)

사서직계

7급(사서) <삭제>

위생직계

8급(위생) <삭제>

기능직 (사무운영/시설관리원) 계

3명

8급(서기)

}

3명

9급(서기보)

## 私學倫理綱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私學은 나라와 끼례의 發展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傳統을 이어 받은 우리 私學은 지금, 새 세기의 文明史的 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고 知識基盤 社會를 선도할 創意의이고 道德의으로 成熟된 人材를 養成할 歷史的 責務를 附與받고 있다.

이에 우리 私學經營者 일동은 教育立國의 使命感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私學의 公共性과 自律性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私學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는 良心과 矜持를 가지고 이 綱領을 遵守하며, 이에 違背되는 경우에는 勸勉과 制裁로 이를 自律的으로 是正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 建學精神

우리는 私學의 뿌리가 崇高한 建學精神에 있음을 銘心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繼承하고 實現하는 일에 獻身한다.

### ○ 公共性

우리는 私學經營에 있어서 學園内外의 個人이나 集團의 사사로운 利害關係를 초월하여 公共性의 原則을 尊重함으로써 教育福祉理念을 具現하는데 最善을 다한다.

### ○ 自主性

우리는 教育의 自主性과 專門性, 政治的 中立性을 保障한 檢法精神에 立脚하여, 私學의 本質을 侵害하는 어떠한 規制나 干涉도 斷乎하게 排擊하며, 自律的으로 教育方針을 實踐하여 私學의 特殊性을 昂揚한다.

### ○ 經營合理化

우리는 私學經營을 合理化·效率化하고, 모든 教育資源을 公正하고 透明하게 管理·保護함으로써, 教育効果를 極大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努力を 傾注한다.

### ○ 和合·協力

우리는 私學 構成員 모두가 自發的으로 參與하고 獻身할 수 있도록, 和合·協力하는 教育環境을 助成하며, 모든 構成員의 正當한 權益이 尊重되도록 努力한다.